

기안용지

(전화 : 362-3818)

시행상
특별취급

분류기호 문서번호	급수 30310-261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본 부 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91. . .	N 34		
보조기관	시설국장	협조기관	법무담당관 김상진 행정과장 김...	문서통제
	급수부장			
	급수장차과장			
기안책임자	이 기준			
경유 수신 참조	과 안 참 조	발신명의 		
제목	도시계획사업(수도)실시 계획 인가.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제목:	같은건			
1. 서울특별시 공고 제607호 (90.12.13)호로 공람공고한 수유2동				
배수지 건설공사의 도시계획사업(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27조 규정에 의하여				
별안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	1. 도시계획사업(수도)실시계획 인가 고시(안)1부.			
	2. 의견서 처리 보고서 1부.			

183

인부담당추출

35/21

3. 위치도 1부.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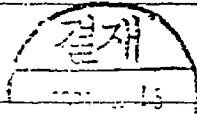
(제2안) 2/61

수신: 홍보계획담당관.

제목: 시보 게재 요청.

1.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 고시문 내용과 같이 수유2동 배수지 건설공사의 도시계획사업(수도)을 실시계획 인가하였기 이를 시보에 게재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 2부.



(제3안) 2/62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본 부 장

제목: 도시계획사업(수도)실시 계획 인가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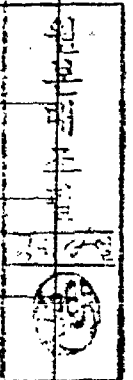
1.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문 내용과 같이 수유2동 배수지 건설공사의 도시계획사업(수도)을 실시계획 인가 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지적연향도 1부.

3. 위치도 1부.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및 물건조서 1부.



수신처: 서울특별시청(시설계획과장,공원과장),도봉구청장(도시정비과장,건설
관리과장).

(제4안)

수신: 건설부장관.

발신: 서울특별시청

제목: 도시계획사업(수도)실시계획 인가 보고.

1. 서울특별시 고시607호 (90.12.13)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된

수유2등배수지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수도)실시 계획을 인가하였기 변경:

고시문 사본과 같이 보고 합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1부.

(제5안)

수신: 서울특별시청

본부장

발신: 본 부 장.

제목: 관인날인 의뢰.

1. 도시계획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유2등배수지 건설공사의 도시

계획사업(수도)을 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 26조및 동법 시행령 27조에 의거

고시하고자 관인날인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시영문 2부.

2. 인가증 2부.

(제6안)

수신: 북부수도사업소장.

발신: 본 부 장

185

참조: 공무과장.

제목: 도시계획사업(수도)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수급수 30310-1387 (90.12.11)호와 관련임.

2. 서울특별시 고시 제329호 (90.10.12) 및 도봉구 고시제20호 (90.

11.29)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유동 산87-2의

1필지 수도용지에 수유2동 배수지 설치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수도)을 실시코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607호 (90.12.13)로 공람공고 완료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 고시문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수도)실시 계획인가 하고,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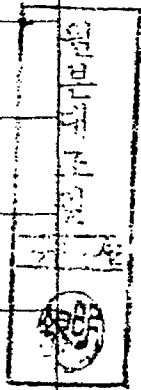
3. 의호관련의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사항은 사업 시행자인 귀소의

처리 의견대로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토록 할것.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인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 호

일시	91.3.13	GP
담당자	도시계획장	법무담당관
	이민	김

고 시 안

도시계획사업(수도)실시 계획 인가

1. 서울특별시 공고 제607호 ('90.12.13)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362-3818) 및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934-8007)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3.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산87-2의 1필지
- 나. 사업의종류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수도), 수유2등배수지 건설공사
- 다. 사업규모및면적: 3,947㎡(소배수지6,000㎡)
-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 마. 사업의 착수및 준공예정일: 1991년 3월 - 1992년 12월31일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목,지적,소유권 이의의 권리명세: 별첨



작성된 수임한 부지의 분석

순번	소재지	규모	면적	소유자		비고
				상명	주소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삼87-2	인	1,550㎡	인영환 인영희	서초구 서초동 산192-3 삼풍아파트 21동 606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강정아파트5동 1105호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삼87-1	인	2,397㎡	박관현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도봉구 수유동 381-2 영등포구 영등신로상동 78	
합	2필지		3,947㎡			

1994. 10. 20
 인영희
 인영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381-2
 인영희

인 가 증

1. 사 업 명: 수유2동 배수지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수유동. 산87-2의 1필지
3. 사업시행규모: 배수지 6,000 M³
4. 사업시행기간: 1991년 3월 - 1992년 12월 31일
5.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국 (북부수도사업소장)
6. 고 시 번 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7. 사용 토지 수응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전의의
관리명세: 별첨.

위 같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 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사업(수도)시행을 인가함.



참 부: 1. 인가조건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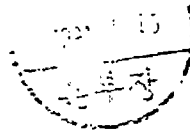
199

서 울 특 별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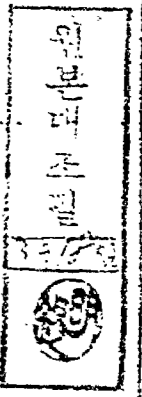
인 가 조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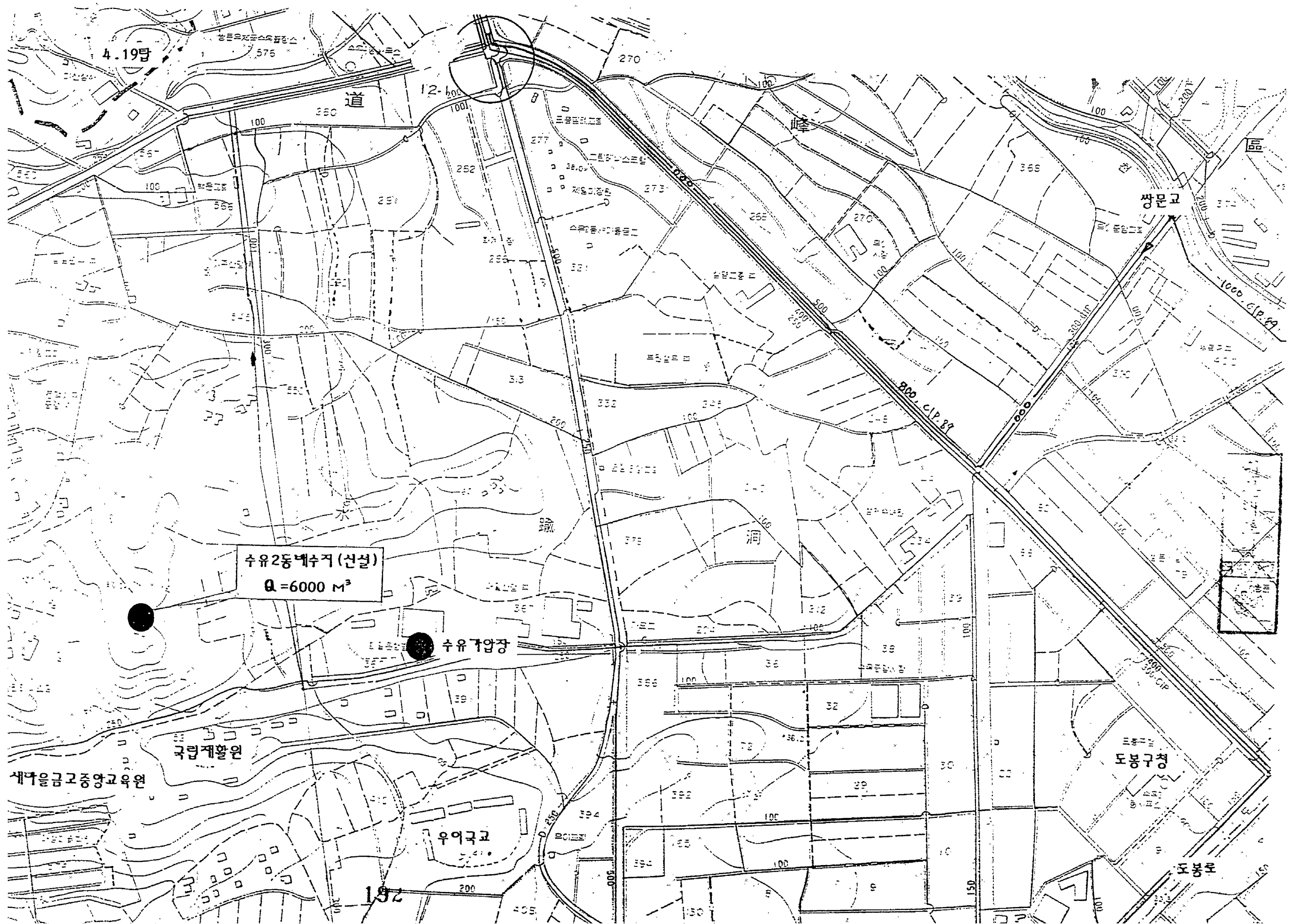
1. 본 공사 시행시 인근 시민들에게 가금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것.
2. 수목이식 또는 벌채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서에 별도 절차를 득하도록 할것.
3. 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안전시설 사고등 제반사항을 수여가자 부담 조치한다.
4. 기타 법령에 의한 절차를 요하는 제반사항은 시행자가 하여야 한다.



의견서 처리 보고서

의견서 제출자		의견서 내용	처 리 의 견	비 고
주 소	성 명			
비밀주주 381-2	박진환 의 6인	<p>수유등산 84-4번지 상애 소택수지 건설사업 반대 (의견서 특척소유자 박진환 의 6인의 선천포가 인근에 있을 경우 추산하고 향후 특척이유계획에 차량의 이동 등 교통의 차질에 반대한다. (유증환) 수유등산 84-1번지 상애 소택수지 건설사업 반대 (의견서 특척소유자 박진환 의 6인의 선천포가 인근에 있을 경우 추산하고 향후 특척이유계획에 차량의 이동 등 교통의 차질에 반대한다. (유증환)</p>	<p>1. 특척소유자 (박진환의 6인) 의견대로 산 84-1 특척소유자 본영하의 사업할 사업은 산 87-2 (임병관의 1인) 또는 산 70-2 (유증환의 3인)의 특척의 승택 수관의 통과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부설특척의 구조가 선행되어야 하나, 가) 산 87-2 (임병관의 1인) 소유자는 승택수관을 개설서 역할은 마디 선행 조건으로 도식계획상 도로(경=4^m L=40^m)를 개설하고 도로건설 안한 편입부지 면적을 요구하며, 나) 산 70-2 (유증환의 3인) 소유자는 특척의 차질에 대해 2. 특척소유자 (박진환의 6인) 의견대로 산 84-1 특척소유자 본영하의 사업할 사업은 산 87-2 (임병관의 1인) 또는 산 70-2 (유증환의 3인)의 특척의 승택 수관의 통과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부설특척의 구조가 선행되어야 하나, 가) 산 87-2 (임병관의 1인) 소유자는 승택수관을 개설서 역할은 마디 선행 조건으로 도식계획상 도로(경=4^m L=40^m)를 개설하고 도로건설 안한 편입부지 면적을 요구하며, 나) 산 70-2 (유증환의 3인) 소유자는 특척의 차질에 대해 3. 특척소유자 (박진환의 6인) 의견대로 산 84-1 특척소유자 본영하의 사업할 사업은 산 87-2 (임병관의 1인) 또는 산 70-2 (유증환의 3인)의 특척의 승택 수관의 통과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부설특척의 구조가 선행되어야 하나, 가) 산 87-2 (임병관의 1인) 소유자는 승택수관을 개설서 역할은 마디 선행 조건으로 도식계획상 도로(경=4^m L=40^m)를 개설하고 도로건설 안한 편입부지 면적을 요구하며, 나) 산 70-2 (유증환의 3인) 소유자는 특척의 차질에 대해 4. 특척소유자 (박진환의 6인) 의견대로 산 84-1 특척소유자 본영하의 사업할 사업은 산 87-2 (임병관의 1인) 또는 산 70-2 (유증환의 3인)의 특척의 승택 수관의 통과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부설특척의 구조가 선행되어야 하나, 가) 산 87-2 (임병관의 1인) 소유자는 승택수관을 개설서 역할은 마디 선행 조건으로 도식계획상 도로(경=4^m L=40^m)를 개설하고 도로건설 안한 편입부지 면적을 요구하며, 나) 산 70-2 (유증환의 3인) 소유자는 특척의 차질에 대해 5. 특척소유자 (박진환의 6인) 의견대로 산 84-1 특척소유자 본영하의 사업할 사업은 산 87-2 (임병관의 1인) 또는 산 70-2 (유증환의 3인)의 특척의 승택 수관의 통과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부설특척의 구조가 선행되어야 하나, 가) 산 87-2 (임병관의 1인) 소유자는 승택수관을 개설서 역할은 마디 선행 조건으로 도식계획상 도로(경=4^m L=40^m)를 개설하고 도로건설 안한 편입부지 면적을 요구하며, 나) 산 70-2 (유증환의 3인) 소유자는 특척의 차질에 대해</p>	<p>의견서 제출자 박진환의 '90.12.27. (박진환) '91.1.7. () 인근특척소유자 박진환의 '91.1.24. (유증환) '91.1.28. (유증환)</p>





4.19답

道

12-60

쌍문교

수유2동배수거 (건설)
 $Q = 6000 \text{ M}^3$

수유개입장

국립계룡원

세덕을금고중앙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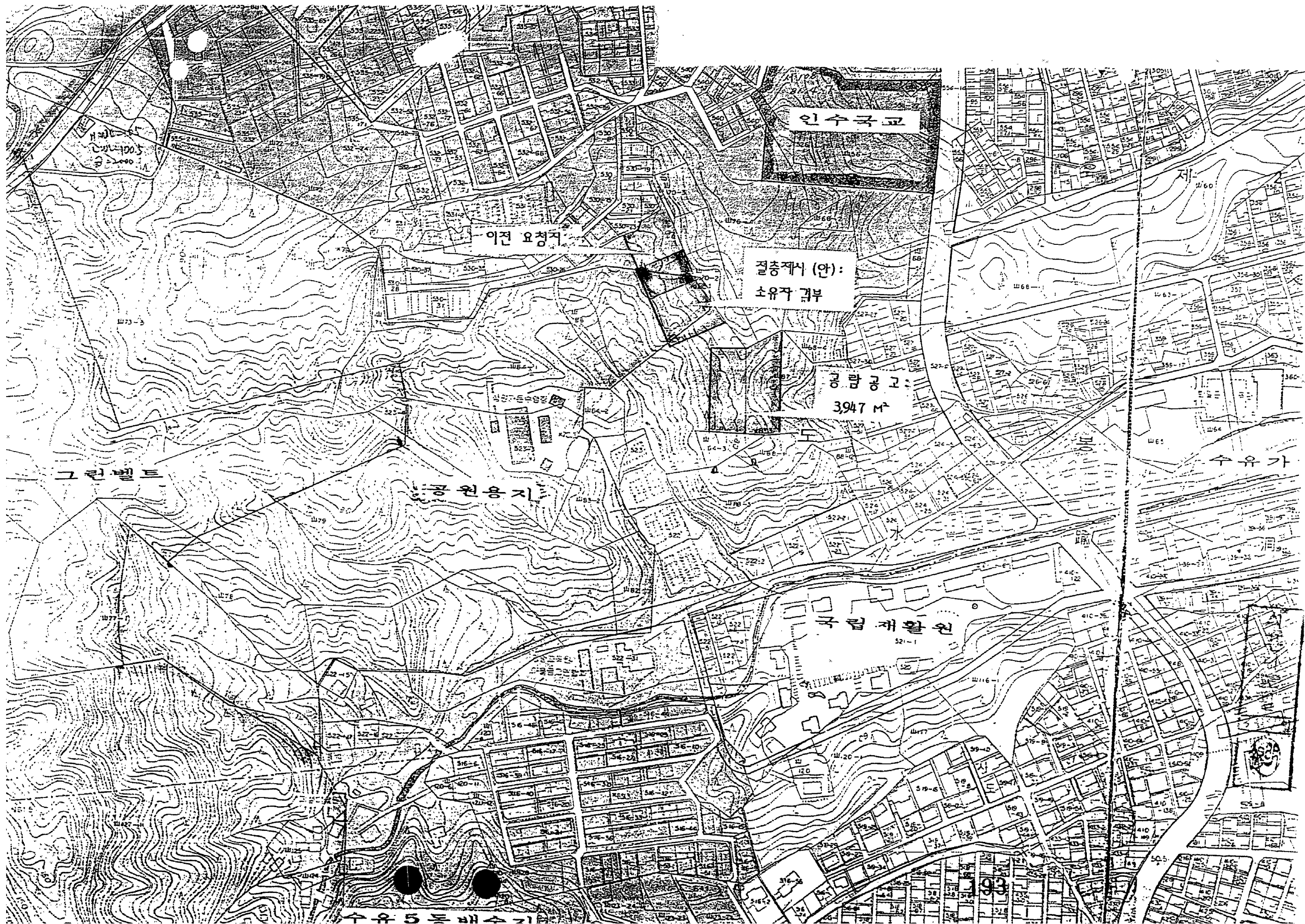
우이국교

도봉구청

도봉면

192





인수국교

이전 요청지

절충제시 (안):
소유자 결부

공람공고:
3947 ㎡

수유가

국립재활원

수유 5동 배수기

그린벨트

영원용지

연 가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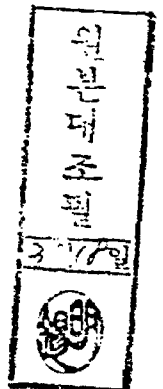
1. 사업 명: 수유2동 배수지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수유동 산87-2의 1필지
3. 사업시행 규모: 배수지 6,000 M²
4. 사업시행 기간: 1991년 3월 - 1992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북부수도사업소장)
6. 고시 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전 의의
관리명세: 별첨

위 같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 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사업(수도)시행을 인가함.

첨부: 1. 인가조건 1부. 끝.

199

서울특별시장



인 가 조 건

1. 본 공사 시행시 인근 시민들에게 가급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것.
2. 수목이식 또는 벌채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서에 별도 절차를 득하도록 할것.
3. 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안전시설 사고등 제반사항을 수허가자 부담 조치한다.
4. 기타 법령에 의한 절차를 요하는 제반사항은 시행자가 하여야 한다.

